###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992

발의연월일: 2021. 6. 23.

발 의 자: 김예지・구자근・金炳旭

김선교・김용판・이명수

이종성 · 지성호 · 최형두

추경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 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현행법에서 정한 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는 등의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은 미성년자인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을 자립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호와 자립지원을 더 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시기를 19세로 상향하고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보호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시· 도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려 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4항제2호의2, 제38조의2 신설).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18세"를 "19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 장을 요청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8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시·도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 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u>트</u> ) ①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	
호대상아동의 연령이 <u>18세</u> 에	<u>1</u> 9세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	
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	
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	
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	<b>4</b>
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2의2.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2년

3. (생 략) ⑤ (생 략) <신 설>

-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3. (현행과 같음)
- ⑤ (현행과 같음)
- 제38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
  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
  원하는 전담기관(이하 "자립지
  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시ㆍ
  도에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
  여야 한다.
  -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립지원전담기 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 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